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춘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23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임춘대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
박춘선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인, 유정희, 이성배,
이종환, 채수지, 홍국표,
황유정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· 위치 · 면적 및 거래품목과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, 해당 사항은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함.
- 아울러 도매시장의 위치 · 면적 및 거래품목을 현행화하고, 주 6일 근무와 장시간 · 심야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유통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매시장 인력이탈 및 구인난에도 대응하여 도매기능을 유지 · 강화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휴업일을 매월 1회씩 추가하되, 추가되는 휴업일은 산지 및 농수산물 유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별 · 월별로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비정기로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· 위치 · 면적 및 거래품목을 현행화하여 규정함(안 제2조의2, 안 별표 1).
- 나.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과 개장일의 영업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매월 1회의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함(안 제2조의3, 안 별표 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와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)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(이하 “도매시장”이라 한다)의 명칭 · 위치 · 면적 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, 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다.

제2조의3(휴업일 및 영업시간)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·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(제2조의2 관련)

도매시장명	위 치	면 적(m ²)		거 래 품 목
		대 지	건 물	
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	송파구 양재대로 932 (가락동 600)	543,451	501,58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실류, 채소류, 산나물류, 목과류, 베섯류, 서류,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• 선어류, 패류, 건어류, 활어(내수면어 포함), 염장어류, 해조류 및 젓갈류 • 농수산물 단순가공물품
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	강서구 발산로 40 (외발산동 427)	213,032	131,66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실류, 채소류, 산나물류, 목과류, 베섯류,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• 농수산물 단순가공물품
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	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(양재동 223)	32,095	18,09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곡류
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	동작구 노들로 674 (노량진동 334)	40,174	118,34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선어류, 건어류, 염건어류, 염장어류, 패류, 해조류 및 젓갈류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(제2조의3 관련)

구 분	휴업일		영업시간
	정기휴업일	비정기휴업일	
양곡부류	일요일, 1월1일, 설연휴(3일), 추석연휴(3일), 하계휴무(1일)	매월 1회 휴업일	07:00 ~ 18:00
청과부류 수산부류	일요일, 1월1일, 설연휴(3일), 추석연휴(3일), 하계휴무(1일)	매월 1회 휴업일	00:00 ~ 24:00

※ 하계 휴무일은 도매시장별로 정한다.

1. 가락시장 : 8월 첫째 주 토요일
2. 기타 시장(강서, 양곡, 노량진시장 등) : 7월 마지막 주 토요일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2조의2(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</u> <u>품목)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</u> <u>수산물도매시장(이하 “도매시장”</u> <u>이라 한다)의 명칭·위치·면적</u> <u>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, 거</u> <u>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</u> <u>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농</u> <u>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</u> <u>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</u> <u>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</u> <u>정한다.</u>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2조의3(휴업일 및 영업시간) 도매</u> <u>시장의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</u> <u>시간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시장</u> <u>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</u> <u>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</u> <u>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3조(지정) ① <u>서울특별시장(이하</u> <u>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3조에</u> <u>따라 도매시장법인(이하 “법인”이</u> <u>라 한다)을 지정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(지정) ① <u>시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·위치·면적 및 거래 품목을 현행화하고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 관련 사안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직접적인 재정수반 요소¹⁾를 포함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해당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해당규정에 의한 직·간접적 영향 미미 예상] 도매시장 비정기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시장수입이 줄어들 경우 출자기관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수입이 감소할 수 있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유선문의 및 각종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시 세입변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, 해당수입은 공사의 자체수입(독립채산제)으로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에서 규정하는 “재정수입”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※ 독립채산제 : 기업을 일반행정 조직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법인 또는 특수법인으로 존치시켜 일반행정 조직의 재정적 통제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도를 의미함